

의 정 정 보

2005 - 22 12. 5

목 차

I. 중앙기관 정보	1
II. 입법 예고된 법령	6
부 록 : 행복한 책 읽기	9

I. 중앙기관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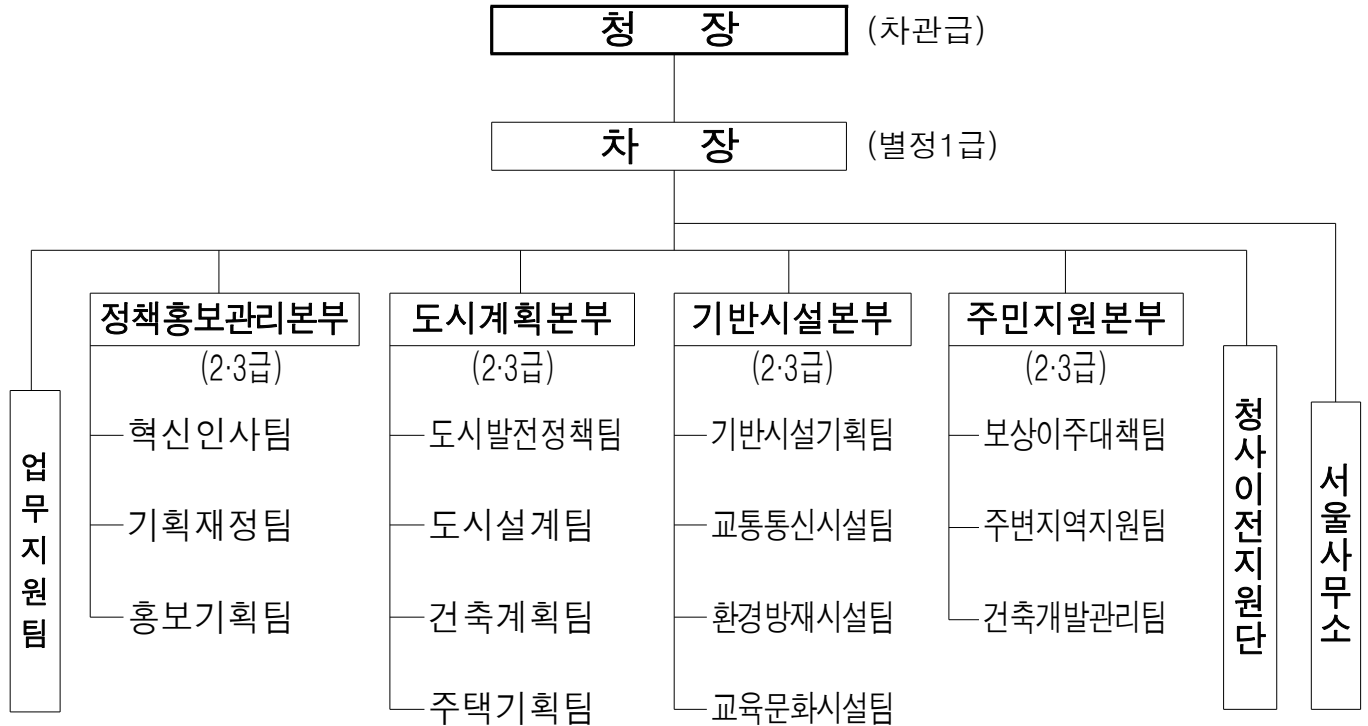
① 정부, 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’ 직제 신설

-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(안)」을 의결했다.
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(이하 “건설청”이라 한다)의 주요기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·조정,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, 예정지역·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,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,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계획의 승인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이다.
- 건설청의 조직은 업무지원팀·정책홍보관리본부·도시계획본부·기반시설본부·주민지원본부·청사이전지원단 등 4본부 1단 15팀으로 편성되며, 소속기관으로 서울사무소를 둔다.
- 건설청의 정원은 청장(정무직) 및 차장(별정직 1급상당) 등 147명으로 구성된다.
-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개청초기부터 과감하게 「본부장-팀제」를 도입하여, 본부장은 2~3급, 팀장은 3~5급, 팀원은 직급 구분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.

- 4개 본부장 중 도시계획본부장은 개방형직위로 내·외부 도시 계획전문가중 우수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,
 - 기타 인력은 건교부·중앙행정기관·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위 공모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.
- 이번 직제 개정령(안)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또한, 건설교통부는 『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』 제정 및 인력선발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2006년 1월 1일 건설청 개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<참 고> : 건설청 기구 및 임무

◆ 기 구 : 4본부 1단 15팀 1소



◆ 정 원 : 147명

합계	정무직	1급 (별정직)	2·3급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	7급	8급	기능
147	1	1	4	5	13	11	39	40	15	1	17

◆ 부서별 주요기능

부 서 명	주요 수행업무
정책홍보관리본부	혁신·조직, 업무기획, 재정, 법무, 홍보, 감사 등
도시계획본부	도시개발전략·도시계획·도시미관계획 수립 등
기반시설본부	건설사업 총괄조정, 도시교통체계·기반시설 구축 등
주민지원본부	보상, 주민이주·생활대책, 건축허가·승인 등
청사이전지원단	행정기관 이전계획 지원, 이전직원 복지대책 지원 등

※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·운영

② 행자부, 노인·장애인·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부세 지원 강화

- 행자부는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율을 0.11% 상향조정하여 매년 1,180억원 이상을 노인,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.
-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서 분권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.

※ 분권교부세율 0.83%→0.94%(증0.11%, 1,180억원 규모)

⇒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내국세 19.13% → 19.24%

-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적게 지원되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있었고,
 -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노인,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지원하게 되었다.
- 분권교부세로 인상되는 재원은 '06년도 기준으로 1,180억원 전액을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하게 되며,
 - 이로인해 2009년까지 5,400여억원의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발생하여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사회복지 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- 아울러,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분권교부세 배분방식도 과감히 개선하였다.
 - 시군구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생활권이 같은 특별·광역시 본청으로 일괄 교부하여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도록 하였고,

-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노인,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시·도비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·도비를 확보토록 하였다.
- 또한, 본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내에 별도의 사업항목을 신설하여,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.

<참 고> : 사회복지사업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'05년도 추가지원

◆ 추가 지원액 : 364억원(지방교부세)

◆ 지원액 산정방법

-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인시설, 장애인생활시설,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8개 사업의 소요예산액(8.31기준)을 기초로
 -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화 하여 산정

※ 대상사업

- 노인 시설 운영 ·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· 정신요양시설 운영 ·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
- 장애인복지관 운영 ·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· 아동 시설 운영 · 사회복지관 운영

◆ 추가 지원액

(단위:백만원)

자치단체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
지원액	-	375	1,550	655	871	1,275	1,255	3,924
자치단체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지원액	4,584	2,251	2,306	3,659	3,412	4,854	3,818	1,550

II. 입법 예고된 법령

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

○ 자치단체장에게 5년단위 교육훈련계획 수립

- 중·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

○ 지방공무원의 자기 능력개발계획 수립·실천

-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자기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,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○ 교육훈련책임관 제도 도입·운영

- 지자체가 교육훈련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교육훈련책임관 제도를 도입

○ 지방5급 이상 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

- 지금까지는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지방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그 운영권한을 지자체로 이양

○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및 우수인력 확보

-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등 교육전문가의 확보를 유도
- 겸직교수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 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

○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필요경비 우선확보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·

행자부장관의 교육훈련 필요경비의 기준 제시

- 지자체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·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경비를 확보토록 의무화

○ 교육훈련 평가결과 공시제도 도입

-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·방법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훈련의 평가기능을 강화

○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

-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폐지 등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국가와 지자체간, 지자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교육인적자원부·행자부에 ‘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’를 두고, 시·도는 ‘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’를 설치

②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

○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

- 연간 365일 초과자 대부분이 고령자(60세이상 72.2%)이며 만성질환자로서 연장승인에 따른 불편과 관리의 한계가 있고, 초과 이용금액 환수실적도 미약한 상태임
-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
- 연간 요양급여일수 제한 폐지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

○ 무이증·소이증 보험급여 확대

- 무이증·소이증은 미용목적으로 보아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
- 비급여 대상에서 무이증·소이증을 삭제하여 급여대상으로 전환
- 취약계층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됨

③ 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

- 사구체 신염, 비루관 협착 등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,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
- 강직성 척추염,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은 평가기준 완화
- 요로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,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면제
- 정신과 질환중 기분장애,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경우 병역 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군병원 정신과 인원환자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조항(5급)에서 필요한 입원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
- '99년 이후 신장·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항(5, 6급)이 폐지되었으나, 심한 저신장자는 군복무가 매우 어려움이 인정되고 보건복지부령 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”상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 신장자(145cm이하)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